



: 2019-02-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98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하충헌(기소), 허수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산요, 김성환
판 결 선 고 2019.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커피숍을 운영하던 자인바, 피해자 C이 위 커피숍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실은 위 커피숍의 월 매출이 2,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고, 매출액에서 월세와 인건비, 관리비를 제외하면 거의 이익이 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커피숍의 POS단말기에 수시로 허위 매출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일일 매출을 조작한 후 그



조작된 매출 자료를 보여주고 권리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창업컨설팅 회사)에서 위 E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C의 남편 G에게 위 커피숍의 매출전표 등 매출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위 커피숍의 월 매출이 2,000만 원 이상이고, 월세와 인건비,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매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니까 권리금으로 1억 200만 원을 내고 인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계약금)을, 같은 달 30. 2,000만 원(중도금)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7. 7. 24. 7,200만 원(잔금)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C의 각 법정진술

1. B 커피숍 월 매출 현황표

1. B 커피숍 일 매출 현황표

1. 사업체 양도 양수 계약서사본

1. 각 거래내역 조회 출력본

1. 각 포스캡처 사진

1. 2017. 6. 21. 포스조작 영상 CCTV캡처화면

1. 2017. 6. 23. 포스조작 영상 CCTV캡처화면

1. 허위매출내역 정리표

1. 이동 저장 매체 USB 1개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범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였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지막 재판 기일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 및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_____